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위원장·상임위원 탄핵소추 및 회의 방송 등〉

■ 강유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763호)

2024. 8.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위원장 · 상임위원 탄핵소추 근거 신설	3
2. 상임위원회 · 소위원회 심의 · 의결안건의 전원위원회 회부	10
3. 방송제도 운영 및 녹음 · 녹화 · 촬영 · 중계방송 허용	15
4. 부 칙	1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유정 · 강선우 · 박희승 · 정준호 · 조 국 · 서영교
위성곤 · 조계원 · 문대림 · 이기현 · 김영배 · 김한규
한병도 의원(13인)

2. 제 안 일 : 2024. 7. 15.

3. 회 부 일 : 2024. 7. 16.

※ 의안번호 : 176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 해야함.

그러나 일부 위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와 국회에서 보여준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권위원회의 권위와 명성이 크게 추락했다는 지적이 있음.

뿐만 아니라 소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를 감당해야하는 일부 상임위

원이 자의적 법해석에 따른 소위원회 운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

이에 인권위원의 면직 사유에 탄핵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인터넷 등으로 중계토록 함으로써 인권위원의 부적절한 언행을 견제하고자 함. 또한 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안건들 중 위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안건들은 전원위원회에 회부토록 함으로써 인권위원들의 자의적인 회의진행을 막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에 대한 탄핵이 가능하도록 하고, 탄핵된 자는 일정기간 인권위원에 지명되지 못하게 함(안 제8조, 제9조 제1항제5호).

나.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심리·의결 안건 중 위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토록 함(안 제13조제3항).

다. 위원회 회의를 영상이나 음성으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 및 중계토록 함(안 제14조제2항, 제3항).

Ⅲ. 검토의견

1. 위원장·상임위원 탄핵소추 근거 신설 (안 제8조 및 제9조 제1항제5호)

개정안은 ①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탄핵으로 면직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위원의 결격사유에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단,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탄핵으로 면직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 4. (생략) <신설> ② (생략)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 ----- -----. 1. ~ 4. (현행과 같음) 5.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현행과 같음)

탄핵이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가 곤란한 행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등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로서,¹⁾

헌법 제65조²⁾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과 국민에 의하여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시 그 권한을 박탈하는 기능을 함.³⁾

현행법상 탄핵소추 대상 직위를 살펴보면, ①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위원 · 행정각부의 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감사원장 · 감사위원은 헌법에서 직접 명시하고 있으며, ②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장 · 차장 · 수사처검사, 특별검사 · 특별검사보는 개별 법률에 탄핵소추 근거 규정⁴⁾을 두고 있음.

1) 헌법재판소 1996. 2. 29. 선고 93헌마186 전원재판부 결정

2) 「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①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위원 · 행정각부의 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 법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감사원장 ·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3) 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전원재판부 결정

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경찰청장) ⑤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⑤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장) ⑤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표-2] 헌법 및 개별 법률상 탄핵소추 대상 직위 및 근거

구 분	대 상	근 거
헌법	○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의 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대한민국헌법」 제65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48조
개별 법률 (직접적 근거)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 및 제16조제5항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개별 법률 (간접적 근거)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등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 검사	「검찰청법」 제37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 차장 · 수사처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 특별검사 · 특별검사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장) ⑤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위원의 해임사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2.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때

「검찰청법」 제37조(신분보장)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신분보장)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신분보장)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개별 법률에 따른 탄핵소추 대상 직위 중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을 결격사유에 규정하고 있는 직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장·차장·수사처검사⁵⁾로서, 개별 법률에 탄핵소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여 반드시 탄핵결정 관련 결격사유를 두고 있지는 않음.

[표-3] 개별 법률상 탄핵소추 대상 직위의 탄핵결정 관련 결격사유 입법례

대 상	탄핵결정 관련 결격사유 내용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위원 포함)	○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위원 포함)	○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검사	○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차장·수사처검사	○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한편, 정무직공무원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장관급) 및 상임위원(3명, 차관급)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원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의 구성원⁶⁾으로서, 인권 관련 법령·제도 등에 관한 권고 및 의견 표명,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수행 업무에서 차지하는 권한 및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음. 특히, 위원

5)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6)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14조(전원위원회 구성) 전원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인권위원 11명으로 구성한다.

제18조(상임위원회의 구성) 상임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장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음.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1회 연임 가능)이며, 결격사유에 해당(당연퇴직 사유)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퇴직 사유)된 경우가 아니면 당연퇴직되거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도록 그 신분을 두텁게 보장⁷⁾받고 있음.

개정안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있어 권한 및 책임이 크며 신분을 두텁게 보장받고 있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할 수 있는 근거와 위원에 대한 탄핵결정 관련 결격사유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합헌적이고 합법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하고 국회의 민주적이고 대의적인 통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임.

첫째, 탄핵소추 근거 마련 여부 및 대상 직위 범위, 탄핵결정 관련 결격사유 도입 여부와 관련하여, 유사한 기관과의 균형 측면에서 국가

7) 「국가인권위원회법」 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인권위원회와 비슷하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소관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⁸⁾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근거와 탄핵결정 관련 결격사유를 두고 있지 않은 반면, ② 방송통신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근거를 두고 있으며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을 위원의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있음. 다만,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3명)에 대한 탄핵소추 근거는 없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우도 상임위원(1명)에 대한 탄핵소추 근거는 없음.

[표-4] 국가인권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비교

구 분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회 정원	11명	5명	9명
위원 구성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7명
탄핵소추 대상 (개정안)	- (위원장, 상임위원)	위원장	위원장
탄핵결정 관련 결격사유 (개정안)	-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8)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이면서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음.

둘째, 법제적 측면에서, 개정안은 본문-단서의 두 문장 구조로 구성된 현행 조문을 전문개정하면서,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탄핵소추 근거를 본문과 단서 사이에 단서 형식으로 신설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조문이 본문-단서-단서의 세 문장으로 구성되게 되어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2개의 단서 규정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음.⁹⁾

또한, 다른 법률에서 탄핵소추 근거를 간접적으로 규정¹⁰⁾할 경우,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임.

따라서, 위원장과 상임위원에 대한 탄핵소추 근거를 다른 항으로 나누어 규정하되, 탄핵소추 규정 방식을 다른 법률의 규정 방식을 참고하여 법문 표현을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¹¹⁾

9) 참고로, 위원의 금고 이상 형의 선고에 의한 면직(본문)과 위원장·상임위원의 탄핵 면직(단서)은 원칙(본문)과 예외(단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10) ◦ 직접적 근거: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간접적 근거: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등

11) 법제적 측면의 수정의견은 다음과 같음.

개 정 안	수정의견
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단,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탄핵으로 면직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신분 보장) ①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탄핵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2. 상임위원회 · 소위원회 심의 · 의결안건의 전원위원회 회부 (안 제13조제3항)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상정된 심의 · 의결안건 중 ① 사안이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어서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지속적으로 위원 간의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율하려는 것임.

[표-5]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 ② (생 략) <u><신 설></u>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상정된 심의 · 의결안건 중 사안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어서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속적으로 위원간의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한다.</u>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2조¹²⁾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업무

1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2조(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와 침해구제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등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는 심의 사항을 연구 · 검토하기 위하여 성 · 장애 등 분야별 전문위원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상임위원으로 구성)와 소위원회(3명 이상 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에서는 ① 전원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의결사항,¹³⁾ ②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¹⁴⁾ ③ 소위원회의 종류

회를 둘 수 있다.

④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과 전문위원의 자격·임기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13)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14조(전원위원회 구성) 전원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인권위원 11명으로 구성한다.

제16조(전원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전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 정책
2. 위원회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에 제출을 건의할 의안에 관한 사항
4. 법·시행령 및 규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5. 상임위원회·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법 제19조제1호에 관한 사항 중 중대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전원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한 사항
7. 법 제19조제6호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8. 법 제28조에 관한 사항
9. 법·시행령·규칙에서 전원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정한 사항
10. 상임위원회·소위원회의 결정으로 전원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11. 그 밖에 전원위원회의 결정으로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한 사항

- 14)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20조(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 ① **상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9조제1호, 제4호, 제5호, 제8호 및 제9호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에 따른 구금·보호시설과 법 제50조의4에 따른 군부대에 대한 방문조사 및 조사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직권조사 개시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소관 부서는 해당 소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법 제48조에 따른 긴급구제 조치 및 법 제50조의9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긴급인권현안에 대한 의견표명 및 권고
5. 전원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6.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② 상임위원회는 상정된 심의·의결안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이 광범위한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③ **상임위원회는 전원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심의하여야 한다.**

· 관장사항 및 심의·의결사항¹⁵⁾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소위원회의 경우 현재 6개(침해구제제1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소위원회별 위원은 3명(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2명)임.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서 회의에 상정된 심의·의결안건이 내용상 중대하고 사회적 영향이 광범위할

-
1. 법 제19조제7호 및 제28조에 관한 사항
 2. 제1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
 - 15)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22조(소위원회의 종류와 관장) ①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다음 각 호를 두어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침해구제제1위원회: 조사총괄과 관장 사항
2. 침해구제제2위원회: 인권침해조사와 관장 사항
3. 아동권리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관장 사항
4. 차별시정위원회: 차별시정총괄과 및 성차별시정팀 관장사항
5.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및 장애차별조사2과 관장사항
6. 군인권보호위원회: 군인권보호국 관장 사항

제25조(소위원회의 심의·의결) ① 소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접수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제3항의 직권조사의 개시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30조제1항 및 제3항의 사건 관련하여 법 제19조제1호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이 필요한 사항
4. 법 제30조제1항 및 제3항의 사건에 대한 합의권고, 조정위원회 회부, 법률구조의 결정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24조의 구금·보호시설과 법 제50조의4 군부대에 대한 방문조사 및 조사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6. 전원위원회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소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② 소위원회는 전원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심의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제6호에 관한 사항
2. 법 제28조에 관한 사항

③ 소위원회는 상정된 심의·의결안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부서는 전원위원회 회부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것으로 예상되거나 심의·의결안건에 대한 지속적인 위원 간 의견 불일치로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의사 형성·결정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어려운 경우 그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함으로써, 인권위원 11명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로 하여금 책임 있고 신중하게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행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20조제2항 및 제25조제3항16)은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상정된 심의·의결안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현재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전원위원회 회부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지속적으로 위원 간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를 전원위원회 회부 사유에 추가하는 한편, ‘회부할 수 있다’를 ‘회부한다’로 수정하여 재량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원위원회 회부에 대한 재량의 여지가 없어져 탄력적

16)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20조(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 ② 상임위원회는 상정된 심의·의결안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5조(소위원회의 심의·의결) ③ 소위원회는 상정된 심의·의결안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부서는 전원위원회 회부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운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으며, 의무적 전원위원회 회부의 사유인 ‘지속적(기간)으로 위원 간 합의(양태)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가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둘째, 법제적 측면에서, 개정안은 ① 국가인권위원회 회의,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는 제13조에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전원위원회 회부 관련 사항을 신설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와 연관성이 적어 제13조에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고,

② 본문에 한꺼번에 나열된 전원위원회 회부 사유가 길고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려우며, ③ 전원위원회란 용어는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아닌 현행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서 법에서 전원위원회를 적절한 용어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근거 규정인 제12조에 개정안의 내용을 신설하되, 전원위원회 회부 사유를 각 호로 구분하고 전원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¹⁷⁾

17) 법제적 측면의 수정의견은 다음과 같음.

3. 방송제도 운영 및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허용 (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개정안은 ① 위원회는 회의를 음성·영상으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방송하는 제도를 마련·운영하도록 하고, ② 회의를 비공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장은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율하려는 것임.

[표-5]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사의 공개) (생략) <신설> <신설>	제14조(의사의 공개) ① (현행 제6조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회 규칙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음성이나 영상으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방송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장은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개 정 안	수정의견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상정된 심의·의결안건 중 사안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어서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속적으로 위원간의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2조(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상정된 심의·의결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한다. 1. 사안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지속적으로 위원 간의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4조¹⁸⁾는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이러한 의사공개 원칙은 방청의 자유를 인정하며 의사에 대한 보도의 자유, 국가인권위원회 회의 자료 및 회의록의 공표나 배부의 자유 등의 원칙을 포함¹⁹⁾하는 것으로 이해됨.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하위 규범에 위원회 회의의 방송제도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에서는 방청에 관한 사항²⁰⁾만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가인권위원회 논의의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전원위원회 등의 회의를 녹화한 영상을 공개하고 향후 공식성이 높은 사안은 생중계하는 방안의 마련을 권고하였음.²¹⁾

개정안과 같이 국가인권위원회가 회의의 음성·영상을 정보통신망

18)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4조(의사의 공개)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2020, p.96

20)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9조(회의의 공개 및 방청 등) ④ 공개되는 회의의 방청을 원하는 자는 위원회가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방청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청인의 방청이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각 위원장은 공개되는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청 인원과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⑥ 각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방청인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위원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
2. 방청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방청한 때
3.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한 때

21)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책임성 강화2: 투명성 제고 방안’,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2018, p.90

을 통하여 방송하고,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율하면,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고 인권위원의 발언내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법제적 측면에서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함.²²⁾

22) 참고로, 개정안은 국회방송 및 중계방송에 관한 「국회법」 제149조 및 제149조의2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며, 법제적 측면의 수정의견은 다음과 같음.

「국회법」 제149조(국회에 의한 방송) ① 국회는 방송채널을 확보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를 그 밖에 국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 등을 음성이나 영상으로 방송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149조의2(중계방송의 허용 등)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으로 한정한다)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국회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개 정 안	수정의견
제14조(의사의 공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회 규칙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음성이나 영상으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방송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장은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제14조(의사의 공개)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음성이나 영상으로 방송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장은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4. 부 칙

개정안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일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

[표-9] 개정안 부칙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먼저, 시행일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방송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2항)과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3항)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법 시행 전에 위원회 규칙의 정비가 필요하고, 방송제도 운영을 위한 방송 설비 마련 및 시스템 구축 등 준비행위도 필요하므로, 이에 필요한 적절한 시행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2조제1항은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의 제정·개정이 필요한 법률안을 입안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법률이 공포된 후 6개월 이상이 지난 후 시행되도록 유예기간을 두도록 규율하고 있음.

다음으로, 적용례와 관련하여,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법 시행 당시 심의 중인 안건에도 전원위원회 회부 의무화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법 시행 후 심의하는 안건부터 적용할 것인지 그 적용관

계를 명확히 하는 적용례를 두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17